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2022.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1인가구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등 (안 제2조~제6조)

다.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기간 :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3) 인권/부패/성별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검토의견 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검토의견 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대상 아님
- 5)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및 미반영사유
인권 영향 평가	제4조제3항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타 것처럼 (예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실태조사를 따로 구체적으로 명기 바람.	반영	제4조제3항 삭제, 제5조(실태조사) 신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패 영향 평가	제6조제5항 지원대상 ‘공유주택’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지원대상 불분명	반영	제2조(용어 정의)제5항 ‘공유주택’ 용어의 정의 추가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절차, 관리·감독, 위법행위 시 제재규정 없음	반영	위탁의 개념 정의 및 절차, 관리·감독, 수탁기관 위법행위 제재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 또는 관련 조례 준용 명시로 아래사항 추가 → 위탁의 절차,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3항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탁 사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탁기관의 무분별한 사무위탁 가능	미반영	제8조에 “위탁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기재(추가)되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무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4. 1인가구의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임정선